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징금 면제 세부기준 법률에 상향 규정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96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과징금 면제 세부기준 법률에 상향 규정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5. 7. 4.
3. 회 부 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 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Ⅲ. 검토의견

1. 과징금 면제 세부기준 법률에 상향 규정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면제 세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에 기소유예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5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u>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 ----- -----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 <u>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u>

<신 설>

<신 설>

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
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
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촬
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
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
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
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
치 또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
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5항 및 제6항 ----- ----- ----- -----.
--	--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면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1)에서 구체적 면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1.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징금 부과 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 사항이었으나, 2024. 3.29. 과징금 부과 면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및 제5항 개정(2024. 3.29.) >

개정전	현행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u>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u> 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u> 1.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신 설>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한편, 현행 시행령 제44조제3항제3호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2)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여야 함.

- 2024. 3.29. 시행령 개정전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를 사유로 불기소되더라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징수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³⁾하에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면제 세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불기소 처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 11. (생략)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함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5. **각하**

가. ~ 사. (생략)

3) 개정안의 제안이유

분에 기소유예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 집행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오인할 여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⁴⁾, 법률 체계의 통일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 규정을 오인하여 집행하는 문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 2024년 관계부처 협업 규제개선 과제⁵⁾로 하위 법령을 함께 개정(2024. 3.

4) <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물건·업소 - (대상) 법령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 (분야) 주류 - (대상) 식품접객업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분야) 담배 / (대상) 소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분야) 주류 / (대상) 식품접객업자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분야) 출입시간·객실 - (대상) 노래연습장업자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 (분야) 게임물등급 -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5) 2024. 2.8.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제1차 2024.2.15., 제2차 2024.3.11.)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음. 제1차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29.)하여 세부 기준도 동일함.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협의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기로 함.

(출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3.11.)

＜ 행정처분 면제 관련 하위 법령 위임 관련 유사 입법례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 면제 세부 기준 관련 유사 입법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 3. 22., 2025. 4. 18.>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2., 2025. 4. 18.>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제54조제3항 각호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내용과 동일하고, 불기소에는 이미 기소유에 처분이 포함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개정안 제54조제3항 각호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신설(2024.3.29.)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낮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법률보다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